

# NEWSLETTER 690

Jul 27, 2022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주요 개정사항

####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및 돼지풀아재비(Parthenium hysterophorus)를 생태계교란 생물<sup>1)</sup>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붙임1 참조\]](#)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양서류·파충류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 강한 포식성 및 잡식성으로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큼 - 국내 천적이 없음 - 사람 공격 사례 有 - 개인 사육이 많으나, 크게 성장하므로 유기가능성 높음
식 물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 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 45개국 이상에서 위해종으로 보고됨 - 고유 식생과 경쟁 - 알레르기 유발 - 다양한 환경에 내성이 강함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안 제4조)

마.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1)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 II.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주요 개정 사항

### 1. 개정 이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sup>2)</sup>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 2. 주요 개정 사항

-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붙임2 참조\]](#)
- 국내 유입(流入)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포유류 11종, 조류 10종, 어류 21종, 절지동물 2종, 양서류 12종, 파충류 9종, 식물 97)

## III.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 2022년 08월 10일(수)

### 2. 제출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화 : 044-201-7287, FAX : 044-201-7261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13호\)](#)

[\[붙임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12호\)](#)

2)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